

교회와 자살(Suicide)¹⁾



지영현 시몬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분에 한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45분에 한명씩 자살로 생명을 잃을 만큼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31명에 이른다. 특별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분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떠맡아 기초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몫이라고 보여 진다.

자살의 개념

인간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²⁾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 사전적으로는 ‘온전한 마음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1) 살인행위를 homicidium 이라고 하듯 자기 자신을 살해한다는 의미로 suicidium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자기의 희생적 죽음과는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상 이미 윤리적 부당성이 지적되어 있다.

2) 윤리신학2 최창무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72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살에 대해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적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왔다. 고대 희랍에서는 자살을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로 보았으며 스토이즘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인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중세기에는 자살을 죄악으로 보고 금지하였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미화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물질주의 사조가 팽창하고 그와 함께 자살이 놀랄 정도로 유행하게 된 것은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희망을 주는 초월적 가치들이 일상적으로 단절됨으로서 종국에는 자살로 이끄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현대에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경제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유용성과 시간성 안에서만 측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배경이 자살을 긍정하거나 적어도 합리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³⁾

자살의 원인

자살행동의 시작은 당면하게 되는 충격적 사건이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원치 않은 생활 변화에서 유발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망, 성폭력, 입시실패 등과 같은 충격적 사건들이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학업 등에서 오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 등으로 나타난다. 또는 실직이나 파산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자살행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없이 주위사람들의 관심 부족이거나, 내적인 갈등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어 특별한 외형적 사건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3) 한국의 자살 실태와 교회의 대처방안 김정우 신학전망 17-18

4)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알퐁소 데肯 오진탁 옮김 궁리 84-85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상의 충격이나 어려움에 당면하면 일반인 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고 자살충동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우울증 환자가 꼭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나 방치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의 정도가 자살하기를 원하느냐의 여부와 같은 관계가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 유지하느냐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마치 자기 인생이 모두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 일본지진 때처럼 가족이나 많은 재산을 잃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집안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느냐의 여부가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⁴⁾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쉽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해결능력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좌절과 어려움에 인내심이 약하여 당황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건을 잘 처리하기보다는 더 크게 만들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자살충동을 느낄 때 자살행동을 충동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살로 인한 상처

자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예, 베르테르 효과)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자기의 고뇌와 절망에 빠져 그 밖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자신의 고민이 크다 해도 다른 사람의 행복마저 짓밟을 권리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가족을 포함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그 외의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옳지 않다.

더욱이 가족 중 자살자가 있는 경우, 유족은 그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자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더욱 심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회복되기 어렵고 힘들다.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⁵⁾

자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가톨릭교회는 자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신 하느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불편부당한 행위’⁶⁾라고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신적존재 방식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받은 존재(Imago Dei)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생명은 신성불가침하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인간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 자살은 비윤리적이다.

2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인간생명 곧 나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며 나의 생명에 대해서나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나 의도적으로 고의로 해칠 수 없다.⁷⁾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⁸⁾

3 십계명 중 다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 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예외 없이 유효하다. 이 법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법이다.⁹⁾

5) 알퐁소데肯 86-91 발췌

6) 최창무 72

7)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서문 5항

4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동시에 이웃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사회와 맺는 연대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5 자살방조, 즉 자살을 하도록 돋는 것은 비록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일에 협조하는 것이며 때로는 실질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투스는 “타인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다. 비록 그 사람이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서 육체의 구속을 끊으려고 애쓰면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 줄 것을 애원하여 죽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요청을 하였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에도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다.” 따라서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이며 자비에 대한 참으로 위험한 왜곡이다. 참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준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¹⁰⁾

6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¹¹⁾

자살예방과 사목적 배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살이란 문제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며 연대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8) 가톨릭교회 교리서 3-4 권 778-779 2280항

9) 가톨릭교회 교리서 2256항, 2261항

10) 생명의 복음 요한바오로2세 회칙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5 153-155 66항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죽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아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더 살고 싶다’, ‘어떻게 좀 도와 달라’고 바라는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은 대체로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 그리고 외로움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이라는 과격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위를 끌고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무의식중에 숨겨져 있다. 고독의 한 가운데서 인간다운 애정과 따뜻한 공감을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절규가 무시당할 때, 당사자는 이제 자기 생명을 끝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절실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자살을 막는 길임과 동시에 자신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커다란 충격과 비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자리하게 된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낸다면, 자신의 생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어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어떤 의도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는 어떤 권위 앞에서도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개방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도망함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자신이 펼쳐나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자살할 생각을 철회할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자살의 원인으로 이웃의 무관심이 자살자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여긴다. 따라서 교회법¹²⁾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살 죄’로 교회가 장례를 거부하기에 앞서 자살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병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요청되며

2) 누가 불행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 경우, 공개적인 죄인 취급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알아보고 인간적 행위의 장애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 ②이웃에게 악한 표양이 없는 한 기도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도록 배려할 것. ③상황이 복잡하여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교구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¹³⁾ 3)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생명교육이 요청된다.¹⁴⁾ 4)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가를 위촉한다든가 몇몇 본당처럼 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언제든 필요할 때 고백성사나 전화 상담과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 성직자와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살은 분명히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일생을 마쳐야 할 자기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공존의 의무에서 신성불가침의 생명을 침해하는 악한 행위이다.¹⁵⁾ 그러나 사후(事後)에 문제를 인식하기보다 자살자가 주위에 악한 표양을 보이지 않았다면 인간적 행위의 장애요인을 참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는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¹⁶⁾ 이와 함께 고백성사나 상담을 통해 사랑에 찬 관심과 도움을 통한 예방적 배려가 필요하다.

12) 1980년 이전 교회법(구교회법) 1240조 1항 3과 235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새교회법 1184조 2항 3에는 뚜렷한 죄인으로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교회가 악한 표양을 주게 되는 경우, 교회장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13) 최창무의 글 72-73

14) 최창무 73-74

15) 최창무 72 발췌

16) 김정우 27